

- 고 시 안 -

~~서울특별시~~ 고 시 제 ~~100~~ 호

도시계획사업(수도) 실시 계획 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호(39. 3. 6.)로 시설결정 및 관악구 고시

제 25호(39. 3. 14.)로 지정승인 고시인 관악구 신림 2동 1-254 일대의 배수

지 설치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, 제 27조

안 ~~도시계획법~~ ~~제 25조~~ ~~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, 제 27조~~ 의 ~~규정~~ ^{첫번째항}에 따라 도시계획사업(수도) 실시
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관악구 고시 제 100호로 고시 합니다.

2. 관계 토지는 공익을 향하여 공공수익에 비치하고 토지권리의 소유자

의 이익 관계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.

1989. 3. 7

서울특별시 ~~시장~~
~~관악구 구청장~~

가. 사업시행지 : 1) 서울특별시 신림동 산1 - 10

2) " 신림동 산1 - 254

3) " 봉천동 산174-648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신림2동 배수지 설치공
사)

다. 사업의 규모 : 1) 신림 2동 배수지 Q=2500 TON

라. 사업시행자의주소, 성명: 관악구청장

마. 사업의착수, 준공 예정일: 1989. 4 - 1989. 12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

이외의 권리명세: 별 첨

사. 토지(권부)소유자와의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

이대권거인의 주소, 성명: 별 첨

아. 시행인가 신청도서: 별첨(개발계획). 꺾.

제2 안

수신 총부서 장관(서울특별시청)

참조 국토관

적부 관(서)보 기재의외

1. 별첨 고시문을 관(서)보에 기재의외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

랍니다.

가. 기재구분: 고시

나. 기재연명: 도시계획사업(수도)집시 계획인가

다. 근거: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

첨부: 고시문 2부. 꺾.

2672

제3 안

수신 건설부장관(서울특별시청)

발신 시장(구청장)

참조 도시계획과장(급수과장, 편심행정과장)

제목 도시계획사업(수도) 실시계획인가 보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호(89. 3. 6.)로 시설검정 및 관악구 고시

제 25호(89. 3. 14)로 고시한 신림 2동 배수지 설치 공사에 대한
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, 발신 고시분과 같이 인가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: 고시문 1부. 표.

제 4 안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도시계획사업(수도) 실시 계획인가 통보

1. 관내 신림 2동 배수지 설치 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

검정 고시분과 같이 인가 하였으니 주민홍보 및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랍.

첨부: 고시문 1부. 표.

수신처: 총무과장, 서무 1, 2과장, 도시정비과장, 건축과장, 공원녹지과장, 토목

과장, 건설관리과장, 신림구동장, 주택과장, 방천8동장.

제 5 안

수신 서울특별시청(시민과장)

제목 시장직인 남인 요청

2673

1. 다음 공문에 대하여 가장 적인 답의 요점을 하오나 답인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가. 도시계획사업(수도)실시계획인가 보고 시행분 1부.

나. 관보 게재 시행분 1부. 끝.

2674